

##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|          |    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<br>번호 | 398 |
|----------|-----|

제출연월일 : 2001. . .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### 제안이유

- 석유판매업(일반·용제대리점) 등록신청시 종전에는 석유사업법시행규칙에 의해 수수료 징수를 하였으나 석유사업법 개정(2000.7.29 산업자원부령 제107호)으로 시·도지사 권한사항으로 이양됨에 따라 수수료 관련사항을 조례로서 정하여 석유판매업(일반·용제대리점)등록시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함

### 주요골자

- 석유판매업 등록신청 수수료 신설
  - 일반·용제대리점 등록신청 : 1건당 30,000원

### 관계법령 : 따로붙임

##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2의 제2호 나목에 (2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| 구 분   | 기 준 | 요 액    |
|---|-----|--------|
| 2. 인가, 허가, 신고, 신청, 등록 시설확인 등<br>나.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<br>(2) 석유판매업(일반·용제대리점) 등록신청 | 1건  | 30,000 |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  |     |     | 개 정 안   |     |        |
|---|-----|-----|---|-----|--------|
| [별표2]<br>제 증 명 등 수 수 요 율 표<br>(단위:원)  |     |     | [별표2]<br>제 증 명 등 수 수 요 율 표<br>(단위:원)  |     |        |
| 구 분   | 기 준 | 요 액 | 구 분   | 기 준 | 요 액    |
| 2. 인가, 허가, 신고, 신청,<br>등록 시설확인 등<br>가. (생략)<br>나. 상공 및 동력<br>자원 관계<br>(1) (생략)<br>(2) (신설) |     |     | 2. 인가, 허가, 신고, 신청<br>등록 시설확인 등<br>가. (현행과 같음)<br>나. ....<br>.....<br>(1) (현행과 같음)<br>(2) <u>석유판매업(일반·<br/>                     용제대리점)등록<br/>                     신청</u> | 1건  | 30,000 |

## 관 계 법 령 발 취

### 【 석유사업법 】

제9조(석유판매업의 등록 등) ①석유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·광역시장 또는 도지사(이하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에게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를 한자가 등록 또는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에게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.

③ - ④ 생략

제31조(수수료) ①제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(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을 제외한다)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